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학생 등에게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학교,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간 연계 기반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하되,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2. 시·도교육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4. 시·도경찰청 소속의 총경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활동을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8.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9.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시·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시·도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시·도위원회는 반기(半期)별로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시·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장으로 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교육장이 위촉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 단, 교육지원청이 과 단위 기관일 경우 과장급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
 2. 교육지원청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 단, 교육지원청이 과 단위 기관일 경우 5급 이상의 과장급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지정하는 사람
 3. 시·군·구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4.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 있는 경찰서 경정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5.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활동을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7.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8.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위원회는 반기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지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앙지원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2. 중앙지원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 중앙지원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시설을 갖출 것
-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⑤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 또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2.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3.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시설을 갖출 것

③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해당 시·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및 운영현황

등에 관한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제1항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지속성, 복합성, 지원 필요성

2. 기타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학생의 학업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건강 및 심리상태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경제상황 및 가정환경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참여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을 선정·지원하는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1. 교장 또는 교감
 2.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의 지원과 관련된 교직원
 3.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학생 선정 요청을 받은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학생 선정 여부,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항 각호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선정·지원으로 해소가 어려운 복합적 위기 정도
 2. 기타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 선정여부, 지원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기간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다만, 학생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사항 및 학교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정여부, 지원내용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
2. 기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⑦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관련 자료를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고,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19세가 될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법 제11조제1항제11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연계된 지원
2. 교육감 및 교육장이 시·도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3.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2조(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의 선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보유할 것
2. 3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3.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관리에 적절한 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학, 청소년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2.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육감이 정하는 상담 관련 자격소지자

③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해당 시·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지정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위탁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지정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연수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원 등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를 위하여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교육연수원의 장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장
3. 그 밖에 연수를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제14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교육감은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지원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6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력인정 현황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예산 현황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방안, 비용의 부담비율, 인력의 배치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업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중앙지원센터,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은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업무의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관리·보유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지원센터, 시도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은 지정 또는 위탁을 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보처리 및 연계정보 이용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지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를 관리·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의 관리·보유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⑥ 교육감은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과 법 제17조제7항의 개인정보 취급 승인을 받은 사람, 제4항에 따른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 등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른 시·도의 교육감,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법 제12조제2항,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생별 지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